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1. . . (제 회)	

물 관 리 기 본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한정애 (환경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는 「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(유네스코) 후원 물 안보 및 지속가능 수자원 관리 국제센터(카테고리 2)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」(조약 제2330호, 2016.12.16. 발효, 2016.12.23. 공포)에 따라 2017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 자연과학 분야 유네스코 국제센터로, 설립 이래 물 안보 연구, 개도국 대상 물 관리 교육·훈련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옴.

사단법인 한국물포럼은 2015년에 대한민국 경주에서 개최된 「제7차 세계물포럼」의 유치 및 개최 준비를 위해 2005년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,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된 국내 최대 규모 물 관련 국제행사인 「대한민국국제물주간」의 사무국으로서 각 국 정부, 국제기구, 연구·학계 및 시민사회 등을 대상으로 물 관리 국제협력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옴.

더욱이 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 설립 등을 규정하기 위해 「물관리기본법」이 개정(법률 제17841호, 2021.1.5. 공포, 2021.7.6. 시행)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이들 물관리 국제협력 전문기관과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통한 안정적인 국가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.

3. 주요내용

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물관리 국제협력의 추진 등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로 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(안 제25조제2항제9호)와 사단법인 한국물포럼(안 제25조제2항제16호)을 추가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2항제15호를 제1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

16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물포럼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(업무의 위탁) ① (생 략)	제25조(업무의 위탁) ① (현행과 같 음)
② 법 제42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.	② ----- ----- -----.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9. <u>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유 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 터</u>
<u>9. ~ 14.</u> (생 략)	<u>10. ~ 15. (현행 제9호부터 제14 호까지와 같음)</u>
<신 설>	<u>16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환경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물포럼</u>
<u>15.</u> (생 략)	<u>17. (현행 제15호와 같음)</u>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환경부 물산업협력과	
연 락 처	(044) 201 - 7633